

## 프랑스 행정심판제도

정보신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법무감사담당관실

### I. 서론

프랑스 행정심판제도<sup>1)</sup>는 처분 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recours gracieux)과 상급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recours hiérarchique)으로 구성된다.<sup>2)</sup> 처분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과 상급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해 취해진 결정에 대하여 행정객체가 제기하는 것이다.<sup>3)</sup> 이것은 행정에 의한 서류의 재심사청구와 관계되며

따라서 행정법원(juge administratif)에 제기되는 행정소송(recours contentieux)과 구별된다.

- 처분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recours gracieux)은 결정을 취한 행정기관에 전달된다.
- 상급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recours hiérarchique)은 결정을 취한 행정기관의 상급행정청에 전달된다.



1) MORAND-DEVILLER Jacqueline, *Cours Droit Administratif*, Montchrestien, 10e édition, 2007, p. 55 :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는 recours administratif préalable(사전적 행정심판)이라고도 한다. 처분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recours gracieux)이든 상급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recours hiérarchique)이든 이러한 행정심판절차는 조정(conciliation)에 근접된 것으로 실제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매우 피상적인 검사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임의적 행정심판주의(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의무적 행정심판(recours préalable obligatoire)을 일반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의무적 행정심판의 예로 조세분야를 들 수 있다. 1928년 이래로 이 소송전 절차(pré-contentieux)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3백만 건의 이의신청이 조세행정에 전달되었으며 그중에 95%가 즉각적인 만족을 얻는다. 이어서 15만의 이의신청이 소송전 절차의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매년 행정법원(tribunaux administratifs)에 제기되는 것은 대략 1만 5천 건에 불과하다. 또한 농촌 토지재통합(remembrement rural)에 관하여도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는데 도 위원회는 의무적 소송전 절차의 방식으로 규율한다.

2) [http://fr.wikipedia.org/wiki/Recours\\_gracieux\\_et\\_hi%C3%A9rarchique](http://fr.wikipedia.org/wiki/Recours_gracieux_et_hi%C3%A9rarchique).

3)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Jean-François Brisson, *Les recours administratifs en droit public français*, L.G.D.J., 1996을 참조할 것.

처분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recours gracieux)을 제기하고 이어서 상급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recours hiérarchique)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상급행정청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정심판 이후에 일반적으로 소송(recours contentieux)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화해(transaction)’의 발전과 행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의 개선을 위하여 1995년 2월 9일 수상의 두 시행규칙(circulaires)이 행정에 지시를 주고 있다.

프랑스 행정심판에 대하여 근거가 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소송(recours contentieux)이 원칙이고 행정심판(recours administratif)은 임의적 절차이다. 따라서 행정객체인 국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은 피상적인 검사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민은 권익구제를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의무적 행정심판절차(recours administratif obligatoire)가 있으며 이 경우에 국민은 행정심판을 거치고 난 이후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는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심판 제도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 II. 행정심판 방식

### 1. 내용

단순한 우편(수령통지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이의가 제기되는 결정과 증명서류를 동반하는 사실주장과 법적 주장을 지녀야 한다.

### 2. 기간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행정심판제기는 이의 대상이 되는 결정의 통지로부터 2월 이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 III. 행정심판의 효과

### 1. 법원에 제소를 위한 기간의 정지

원칙적으로 행정에 의하여 취해진 결정으로부터 2월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객체는 법원에 제소를 위한 2월의 추가 기간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연장은 한 번만 유효하다. 또한 처분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recours gracieux)을 거치고 나서 상급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recours hiérarchique)을 한 경우에 상급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이 실패하면 행정법원에 동시에 소송(recours contentieux)을 제기하여야 한다.

## 2. 행정의 응답

행정은 행정심판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2월의 기간을 가진다.

이러한 응답이 없는 경우에 침묵은 행정심판의 묵시적 거부를 의미한다.

묵시적이거나 명시적 거부의 경우, 2월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recours contentieux)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 IV. 의무적 행정심판(recours précontentieux obligatoires)의 경우<sup>4)</sup>

여기에서는 월권소송(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의 도입 사전의 의무적 행정심판<sup>5)</sup>의 예와 행정심판(recours administratifs)에서 취해진 결정의 소송상 자격의 몇 가지 측면을 다룬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recours administratifs)의 존재가 행정소송(recours juridictionnel)의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입법가가 그러한 메커니즘을 제도할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행정소송의 행사에 대한 사전적 의무적 절차를 구성한다.

이 절차의 행사를 조직화하는 규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열거된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정심판의 절차의 준수가 강제되며 이 경우에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행정소송에서 기각(l'irrecevabilité)된다.

### 1. 행정소송의 도입 사전의 의무적 행정심판의 몇 가지 예<sup>6)</sup>

(1) 하천유역 재정기관(Agence financière de bassin)

1964년 12월 16일 법률 n°641245의 제14조에서 언급된 사용료(redevances)의 결제에 관련된 이의신청(réclamations) : 1966년 9월 14일 Décret 제21조 참조 :

- CE, 29 septembre 1982, société André Duriez et fils, C.J.C.E., 1983, p. 9.

(2) 예방 고고학(Archéologie préventive)

2001년 1월 17일 법률 n° 2001-44의 적용을 위하여 취해지고 예방 고고학에 관한 행정적, 재정적 절차에 관련된 2002년 1월 16일 Décret n° 2002-89 제31조 참조.

공공시설(l'établissement public)에 전달된



4) <http://gymnopedie-juridique.net/recevabilite/decision/precontentieux.html>. 참조.

5)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Eugénie Prévédourou, Les recours administratifs obligatoires - Étude comparée des droits allemand et français, L.G.D.J., 1999을 참조할 것.

6) 이하에서 열거한 리스트가 의무적 행정심판의 예를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이의신청과 고고학 사용료 행정위원회(commis-sion administrative de la redevance archéologique)의 제소는 정지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규정한 제30조의 마지막 항이 취소되었다 :

- CE, 30 avril 2003, Union nationale des industriels de carrières et des matériaux de construction(UNICEM) et association professionnelle des produits minéraux industriels et autres, n°244139, 244186, 244255.

### (3) 재산권자 조합협회(Association syndicale des propriétaires)

재산권자 협회의 허가를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도지사의 명령(l'arrêté préfectoral)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격 있는 장관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1865년 6월 21일의 변경된 법률 제13조 참조. 소송기간은 이러한 명령의 게시로부터 1월이다 :

- CE, 29 juillet 1994, C..., n°144630.

### (4) 사냥(Chasse)

환경법전 R. 225-9는 개별적 사냥 계획(plans de chasse individuels)의 개정에 특정한 행정절차를 조직화하고 있다. 소송상의 청구의 도입 이전에 이러한 절차의 준수하에서 도지사에 사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의무적이다 :

- CE, 15 janvier 1986, Association de défense des intérêt de la chasse d'Escalans(Landes), n°63284.

### (5) 행정서류의 전달(Communication de documents administratifs)

몇 가지 예 :

- CADA의 사전적 행정심판 : 1978년 7월 17일 법률 제7조
- 이 법률의 제5조의 기초 위에서 자문의 청구 :
- CE, 21 septembre 1990, sàrl Villerupt Auto Ecole, n°89251.

### (6) 징계(Discipline)

몇 가지 예 :

- 스포츠연맹 : 하위기관에 의하여 취해진 징계제재(sanctions disciplinaires)의 이의절차
- 중학교징계회의(Conseil de discipline des collèges)
- 직업단체(Ordres professionnels)
- 죄수는 형사소송법전의 Décret 250-5의 적용으로 취해진 교도부의 지방책임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결정만을 행정법원에 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시초의 제재를 대체하고 상급감독청에 대한 행정심판(recours hiérarchique)의 접수로부터 1월의 기간 이내에 개입한다 :
- CE, 29 décembre 1999, M.L..., n°210147
- CAA Douai, 25 février 2003, M. Franck M., n° 00DA00535

### (7) 교육(Enseignement)

몇 가지 예 :

◦ 교육장학금(bourse d'études) : 장학금부여를 위한 권한 있는 위원회의 조직과 작용에 관련된 1959년 12월 18일 Décret :

- CE, 9 février 1996, R..., n°161450.

◦ 중학교징계회의(Conseil de discipline des collègues) : 1985년 8월 30일 Décret n° 85-934 제31조와 1985년 12월 18일 Décret n° 85-1348 제8조 : CE, 13 mai 1992, B..., 198.

#### (8) 외국인(Etrangers)

외교기관과 영사기관에 의하여 발부되는 비자의 거부에 대한 이의를 심사할 것을 맡는 위원회의 행정심판이 월권소송의 도입 이전에 사전적으로 거쳐야 할 것으로 의무적이다 : 2000년 11월 10일 Décret n° 2000-1093 1° :

- CE, 19 mars 2003, M. Mohamed X., n° 236611.

- CE, 18 juin 2003, M. Mojumder X Y, n° 240290. 이 판례는 행정소송의 수소요건규정과 모든 행정결정은 상급행정기관(l'autorité hiérarchique)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일반원칙의 적용과 결합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심판의 사전적 성격(préalabilité)은 이 위원회가 행정소송법전 L. 521-1의 기초 위에서도, 행정소송법전 L. 521-2의 기초 위에서도 판결하지 않을 것을 기다리지 않고 고발법원(juge des référés)에 제소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 CE, 9 août 2004, M. et Mme Alaettin T., n°

270860.

시초의 영사기관의 결정에 위원회의 결정의 대체에 관하여 :

위원회에 의해서든 장관에 의해서든 이의신청에 이어 취해진 결정은 시초의 결정을 대체한다; 시초의 결정만이 적법성의 법원에 고발될 수 있다 :

- CE, 24 novembre 2005, M. M..., n° 286733, 287100.

- CE, 20 janvier 2006, M. B..., n° 280819.

#### (9) 스포츠연맹(Fédérations sportives)

육체 및 스포츠 활동의 조직과 촉진에 관련된 변경된 1984년 7월 16일 법률 n° 84-610(제19-IV조)은 공권력의 위임의 범주 안에서 스포츠연맹에 의하여 취해진 것으로 조정의 목적으로 프랑스 국립올림픽 및 스포츠 위원회의의 내부 심판의 대상이 되거나 될 수 없는 결정으로부터 나오는 분쟁에 관련된 행정소송 이전에 사전심판 절차를 거치게 한다 :

- CE, 16 mars 1998, Fédération française du sport automobile, n° 169743.

- CAA Paris, 8 avril 2003, fédération française de handball, n° 02PA02539.

#### (10) 조세(Fiscal)

지역시설세(taxe locale d'équipement) : CE, 18 février 1985, C..., n° 42444, T.

## (11) 공무원(Fonction publique)

행정동수위원회(commission administratives paritaires)에서 선거(1982년 5월 28일의 Décret 82-451 제24조) : 소위 선거작용에 관련된 이의제기는 관련 장관에 행정심판(le recours administratif)의 대상이 되기 전에 행정법원에 제기될 수 없다 :

- CE, 5 décembre 1969, Elections de représentants du personnel à la commission administrative paritaire des adjoints administratifs et autres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a Justice, n° 77028.

## (12) 주거(Logement)

APL의 지불을 맡은 조직체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도 위원회에 따라야 한다 : 건설 및 주거법전 L. 351-14 :

- CE, 22 avril 1992, A..., n° 90731, T.

## (13) 공공조달(Marché public)

거래가 소송 이전의 사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법원에 직접적으로 제소하는 것은 불가수리(irrecevable)이다 :

- CE, 9 décembre 1991, S..., p. 423.

- CE, 5 mars 1993, V..., n° 110580.

## (14) 군사(Militaire)

2000년 6월 30일 법률의 제23조의 적용으로 2001년 5월 7일 décret 제1조는 징계권의 행사

나 채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국방부장관에 인적 지위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군인에 의해서 행해진 행정심판을 검사하는 것을 맡는 위원회를 제도화하였다 ; 제1조의 제2항은 위원회의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의 행사 이전에 사전적인 절차로서 의무적이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행정소송은 불가수리이다.

## (15) 집행적으로 이의제기(Opposition à titre exécutoire)

조세와 공물(domaine)에 무관한 사항에서 집행적으로 이의제기는 1992년 12월 29일 décret n° 92-1369의 제7조에서 규정된 사전적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전적 행정심판절차의 의무는 신청인이 행정법원에서 새로운 모든 청구수단을 발전시키는 것을 박탈하지 않는다 :

- CAA Versailles, 7 juin 2005, S.A SMAC Acieroid et Société mutuelle d'assurance du bâtiment et des travaux publics SMABTP, n° 04VE00673.

## (16) 직업단체(의사, 구강외과의사, 조산원)

공중보건법전 L. 4112-4에 따라서 명부에 등재 요구에 관하여 행해진 도회의(conseil départemental)의 결정은 지방회의(conseil régional)에 이의신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무적 사전적 행정심판(recours préalable obligatoire)은 도 회의에 의하여 취해진 결정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 충분한 이익을 정당화하는 모든 의료실무가에서와 같이 자격 있는 일반 기관에서와 같이 등재를 요구한 의료실무가에게 강제된다 :

- CE, 28 septembre 2005, M. L..., n° 266208, 266210.

수의사 단체의 지방회의의 행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CE, 2 mai 1990, T..., p. 110.

#### (17) 퇴직자 연금(Pensions de retraite)

법적 오류에 기초한 연금의 개정청구는 연금의 시초 양허의 통지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퇴직자의 민간 및 군사 연금법전 L. 55 :

- CE, 13 octobre 1982, Ch..., n° 41951.

#### (18) 송환자(Rapatriés)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직업 안에 다시 설치된 송환자의 채무탕감국가위원회 :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직업 안에 다시 설치된 송환자의 채무탕감에 관련된 1999년 6월 4일 décret 제12조 :

- CE, 26 novembre 2004, Société Groupe Comte, n° 261556.

- CE, 19 décembre 2008, Mme M..., n° 297187.

#### (19) 직업명부(Registre des métiers)

등록 혹은 삭제 : 1983년 6월 10일 Décret n° 83-487

- CE, 24 janvier 1996, B..., n° 111516.

#### (20) 토지재통합(Remembrement)

농촌법전 R. 121-26 참조. 꼬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의 통지나 공표로부터 1월의 이내에 도 위원회에 제기되어야 한다.

#### (21) 공중보건(Santé publique)

특히 다음이 그러하다 :

◦ 의약 특허조제의 시장투입에 대한 허가 : 공중보건법전 R. 5135 :

- CE, 26 novembre 2001, société Laboratoires Negma, 233785.

- CE, 23 juillet 2003, société CLL PHARMA, n°243926.

- CE, 29 décembre 2004, société Laboratoire Glaxosmithkline, n° 259085.

◦ 보건시설 : 공중보건법전 L. 712-16 :

- CE, 3 mai 2002, Clinique médicale de pneumologie de Sainte Anne, n° 224565.

◦ 보건, 사회 조직 초안 : 공중보건법전 L. 6121-8과 L. 6121-4 :

- CE, 7 février 2003, Fondation Lenval, n° 231871.

#### (22) 사회보장(Sécurité sociale)

일반제도, 수공업적 · 공업적 · 상업적 직업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근로자의 노령보험제도, 비농업적 직업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근로자의 질병과 모성보험제도의 사회보장조직체의 감독 공무원의 직종에 자격리스트, 광산에서 사회보장 조직체의 상급간부직의 자격리스트, 질병보험기금의 지방연합 감독공무원의 직종에 자격

리스트(사회보장법전 R. 123-45). R. 123-45의 적용을 위해서 취해진 1998년 9월 25일 명령의 제2조에 의해서 조직화된 처분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recours gracieux)은 행정법원에 제소 이전의 사전적 의무적 절차를 구성한다 :

- CE, 15 février 2002, M. M..., n° 237777.

### (23) 특별징수세(Taxes parafiscales)

1980년 10월 30일 décret n° 80-854 제8조

- CAA Paris, 18 décembre 1990, B..., n° 89Pa01462, T.

### (24) 노동(Travail)

예 :

- 대체소득의 이득거부는 처분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recours gracieux)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노동법전 R. 651-34). 이러한 처분행정청에 대한 행정심판에 관하여 4월 이상 동안에 유지된 침묵은 거부결정으로 본다(노동법전 R. 651-34의 마지막 항).

- 직업교육 : 노동법전 L. 231-5, L. 231-5-1, R. 231-13, R. 231-13-1, 제2항 :

노동, 고용, 직업교육의 도 책임자가 노동법전 규정에 위반으로부터 생기는 위협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익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mise en demeure)한 시설의 장은 이러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사전에 L. 231-5-1에서 규정된 노동, 고용, 직업교육 지방 책임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

- CE, 13 novembre 2002, Société Socopar, n° 232265.

### (25) 상업 도시계획(Urbanisme commercial)

상업 시설 도 위원회의 결정은 상업시설 국가 위원회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1973년 12월 27일 변경된 법률 제32조). 허가의 청구자, 도지사에게 있어서 그리고 도 위원회의 구성원에게 있어서 이러한 절차는 행정법원에 제소 이전에 의무적 행정심판절차의 성격을 지닌다(상법전 L. 720-10) :

- CE, 11 février 2004, S.A.R.L. Centre de jardinage Castelli Nice, n° 242849.

반대로, 제3자는 행정법원에 직접적으로 제소할 수 있다 :

- CE, 10 mars 2006, société Leroy Merlin, n° 278220.

## 2. 사전적 의무적 행정심판에 관하여 행해진 결정의 자격

위와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기관에의 신청은 행정소송의 행사에 사전적인 의무적 절차이다. 이러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행정결정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은 불가수리의 항변(exception d'irrecevabilité)이 제기될 수 있다. 공공조달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경우에 행정법원에 제소 이전의 사전적 이의신청 절차의 경우에는 사전적 이의신청이 없으므로 인

하여 도출되는 불가수리의 항변은 공중질서 (l'ordre public)에 속하지 않는다 :

- CE, 29 septembre 2000, Société Dezellus Métal Industrie, 186916.

이러한 절차의 준수는 이러한 행정소송을 도입하는 데에 자격을 부여하는 이익을 정당화하는 모든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즉, 이러한 절차는 결정의 수익자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제3자에게도 강제된다 :

- CE, 5 septembre 2005, M. L..., n° 266208, 266210.

(1) 행정법원에 제소 이전에 행정심판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신청의 행정상의 효과

1° 조문이 그러한 행정심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 이러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동일한 정지적 효과를 가진다. 행정소송이 정지적 효과를 가지면 행정소송에의 제소 이전에 사전적 행정심판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

- CE, 30 avril 2003, Union nationale des industriels de carrières et des matériaux de construction (UNICEM) et association professionnelle des produits minéraux industriels et autres, n° 244139, 244186, 244255.

2° 신청을 받은 상급 행정청 (l' autorité hiérarchique)은 재결일자에 청구를 평가하고 따라서 시초의 결정 이후에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행정심판기관에 의하여 취해진 결정은 시초의 결정에 전적으로 대체된다 :

- CE, 19 novembre 1965, Epoux D.-F., n° 60647 : 토지재통합.
- CE, 18 novembre 2005, M. H..., n° 270075 : 군인에 의해서 제기된 신청.
- CE, 20 janvier 2006, M. B..., n° 280819 : 비자거부.

그러나 쟁송이 제3자에 의해 행사된 경우에 이러한 쟁송의 거부결정은 적어도 의약 특허조제의 시장투입의 허가에 관해서 허가의 시초 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

- CE, 29 décembre 2004, Société Laboratoire GlaxoSmithKline, n° 259085.

(2) 행정법원에 제소 이전에 행정심판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기관에 신청의 소송상의 효과

1° 시초의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논고는 불가수리이다 :

- CE, 4 juillet 2005, M. B..., n° 267201.

그러나 시초의 결정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제기된 논고로 제소를 받은 행정법원은 그것을 사전적 의무적 행정심판의 행사로부터 나타나는 결정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

- CE, 22 janvier 2007, Mme L..., n° 289811.
- CE, 19 décembre 2008, Mme M..., n° 297187.

2° 행정심판에 관하여 취해진 결정에 대하여 제기되고 시초의 결정을 취하기 위해서 잇따른 결정을 비판하는 청구수단(moyens)은 효과가 없다 :

- CE, 3 novembre 2003, M. H..., n° 248606.

장관이 첫 결정의 동기를 평가하면 제외 :

- CE, 15 juin 2005, M. S..., n° 261170.

3° 새로이 주장된 청구수단이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을 하게 된 것과 동일한 분쟁과 관련된 한 시초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뒷받침하기 위

하여 제기된 것이 아닐지라도 신청인은 예심의 종결까지 새로운 법적 모든 수단을 법원에 주장할 수 있다 :

- CE, 21 mars 2007, M.G..., n° 284586.

이 순 우

(외국법제조사위원)